

# 본청1차[농정과]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농정과	총 8건 [공통3, 농정기획3, 농산물유통1, 축산진흥1]	주의 4 시정 3 권고 1		회수 3건 989,240원
1	공통	◦ 예산집행 부적정[계약미체결]	주의		
2		◦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 건물시설물의 공제등록 부적정	권고		
4	농정기획	◦ 지출증빙서류 구비 부적정	주의		
5		◦ 여비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42,500원
6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53,740원
7	농산물유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693,000원
8	축산진흥	◦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 집행 부적정[계약 미체결]

【현 황】

○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비 고
사무관리비	2019.06.12.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영동군 홍보전시대 제작	2,727,500	-	농산물유통
사무관리비	2019.06.28.	용두공원 전광판 점검	99,000	-	농정기획
사무관리비	2019.08.28.	용산구 자매시군 특산품 전시장 전시물품 구입	384,000	-	농산물유통
사무관리비	2019.10.15.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공간 파티션 및 책상유리 구입	550,000	-	친환경농업
사무관리비	2019.12.30.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전시물품 구입	440,000	-	농정기획
사무관리비	2019.12.30.	영동군 우수 농특산물 명절 선물세트 카달로그 제작	4,400,000	-	농산물유통
사무관리비	2020.01.22.	사무실 직원 겨울방석 구입	308,000	-	농정기획
사무관리비	2020.04.08.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용 장비 구입	297,500	-	축산진흥
사무관리비	2020.04.17.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용 장비 구입	611,000	-	축산진흥
사무관리비	2020.04.17.	복사기 토너카트리지 구입	1,177,000	-	농정기획
사무관리비	2020.04.28.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 현수막 제작	600,000	-	축산진흥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음.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별 대상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공여의 증거로서 계약성립의 증거로 보아 별도의 계약없이 일반지출결의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공사[용역] 집행[수리·수선] 지출결의서)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등을 사용하여 이면에 계약에 대한 기본 이행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승낙하는 날인을 하여 약식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음[신용카드 사용 시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 그럼에도, 농정과에서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영동군 홍보전시대 제작 외 10건을 집행하면서 계약 자체를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피복비 집행 현황

연번	지출일	구입내역	구입처	지출금액 (원)	비고
1	2019.05.29.	작업복 3벌, 작업화 3켤레	-	1,200,000	농업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2	2019.06.12.	작업용 모자 51개, 작업용 마스크 51개	-	2,993,700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지원
3	2020.01.30.	방한복 6벌	-	1,800,000	가축방역 방한복
4	2020.01.30.	근무복 2벌	-	200,000	청원경찰 근무복

【위법부당사항】

### 1.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사무관리비 (201-01) 중 피복비 부분을 살펴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하여야함)” 고 규정하고 있음.

## 2. 관계사실

- 그러나, 농정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업무성격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담당자 외의 기타 지원요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작업복을 구입·지급하였고, 회계부서를 통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에게 근무복을 구입·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 관계부서 의견

- 친환경농업팀에서는 농업소득보전 직불제추진 작업복 및 작업화의 경우 직불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지자경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이 잦은 업무로 담당자에게는 작업복 및 작업화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가축방역팀에서는 방한복의 경우 가축 전염병의 특성상 대부분 겨울에 발생하고 전염병 발생 시 현지 확인, 방역업무 등을 위해 외부 출장이 많음으로 담당자 3인에게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특성상 필요하지만, 이외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방한복을 지급한 것은 예산집행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4. 의견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에 대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업무용도에 맞지 않는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구입을 지양하고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무분별하게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기 위함임.

- 그러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에서는 농업소득 직불제추진을 위한 업무 담당자가 1인임에도 불특정 공무원 2인을 포함하여 1인 기준 400,000원의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가축방역팀에서는 가축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담당자가 3인임에도 공중방역 수의사 2인, 불특정 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1인 기준 300,000원의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팀의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지원 작업용 모자, 마스크 및 축산진흥팀의 청원경찰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있다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제품을 구입·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업무용도에 맞는 피복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구입·지급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남진만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물·시설물의 공제등록 부적정

【현 황】

○ 건물시설물 관리 공제등록 현황

구 분	배상종류	소재지	공 제 가 입 기 간	연 간 공 제 회 비	보장내용	비 고
영 동 군 거 점 소 독 소	영조물배상	용산면 울 리	2020년 (1년)	26,900원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대인=신체손해
	건물시설물 재 해 복 구	용산면 울 리	2020년 (1년)	1,133,700원	건물공제 신체손해	<u>중복가입</u>
내수면불법 단 속 용 고 무 보 트	영조물배상	영동군 영동읍	2020년 (1년)	552,000원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민간인 대상 손해배상 <b>부적합</b>
영 동 포 도 과 일 제 조 가 공 셴 터 (위탁운영)	영조물배상		<b>미가입</b>			영조물 배상관련 가입 <b>권고</b>
	건물시설물 재 해 복 구	영동군 황간면	2020년 (1년)	426,000원	건물공제 전기위험 화재대물	
영 동 포 도 과 일 공동 제 조 가 공 셴 터 창 고 (위탁운영)	영조물배상		<b>미가입</b>			영조물 배상관련 가입 권고
	건물시설물 재 해 복 구	영동군 황간면	2020년 (1년)	175,170원	건물공제 신체손해 화재대물	

【위법부당사항】

○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에서 소유 사용 관

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가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의 각종 민원서류 및 제 증명발급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함.
-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영동군거점소독소는**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배상공제에 2020년 가입하고 있음.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장내용이 대인보장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배상공제의 신체손해 보장내용이 중복 가입되어 있음.

내수면불법단속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상공제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대상임에도 영조물배상공제에 부적합하게 가입되어 있음.

영동군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시설물 영동포도과일제조가공센터 및 창고에 대하여는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9조에 따라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배상공제는 가입하고 있음. 영조물 배상공제에 해당하는 협약서 ③항, ④항에 대하여는 현재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건물소유자인 영동군의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음.

##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공제등록 가입 시 보장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 또는 불필요한 보장사항에 대해 가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증빙서류 구비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집행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사무관리비	2019.10.11.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	4,830,000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대신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첨부
사무관리비	2019.10.29.	2019년 거점소독소 운영물품 구입	168,500	-	신용카드결제건이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사용
사무관리비	2019.12.06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자재 구입	730,000	-	신용카드결제건이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사용
사무관리비	2019.12.17.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쇼핑백 제작	8,425,000	-	재무과 계약팀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했음에도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약식계약 추가 날인
사무관리비	2019.12.17.	가축질병 차단방역 홍보용 입간판 제작	3,040,000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이나 매입필증 징구
사무관리비	2019.12.30.	영동군 우수 농특산물 명절 선물세트 카달로그 제작	4,400,000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대신 매입확인서(고객보관용)첨부
사무관리비	2020.04.17.	거점소독소운영 관련 근무자 식수 구입	80,000	-	구매내역(납품서) 및 담당자 납품확인 누락

##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그럼에도, 농정과에서는 2019. 10. 11.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구입 외 1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대신 고객보관용 매입확인서를 첨부하였고, 2019. 10. 29. 2019년 거점소독소 운영물품 구입 외 1건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별도 약식계약 사항이 포함된 지출결의서를 사용, 2019. 12. 17.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쇼핑백 제작 건은 계약부서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도 약식계약 사항에 날인, 같은 날 지출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홍보용 입간판 제작비는 일반운영비 카드결제 건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제외 대상이나 매입필증을 징구하여 첨부, 2020. 4. 17. 거점소독소 운영 관련 근무자 식수 구입에 대해서는 구매내역(납품서) 첨부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42,5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1.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559,900	337,400	222,500	
2019.04.10.	**9급 A	2019.03.14.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일비	20,000	2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식비	-	-	-	
				교통비	12,100	5,800	6,300	
2019.07.09.	**9급 A	2019.06.19.	병해충 방제용 드론교육 참석	일비	20,000	-	2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식비	-	-	-	
				교통비	14,800	-	14,800	
2019.08.06.	공중병역 수의사 B	2019.07.12.	산란노계 출하관련 살충제 검사용 시료채취	일비	20,000	2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식비	8,000	8,000	-	
				교통비	23,000	18,600	4,400	
2019.12.06.	**9급 C	2019.11.20.	퇴비 부속도 담당자 워크숍 참석	일비	20,000	2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식비	-	-	-	
				교통비	10,000	5,800	4,200	
2020.02.06.	**6급 D	2020.01.10.	축산방역사업 시달회의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16,400	-	16,400	
2020.02.06.	*6급 D	2020.01.17.	가금이력제 관계자 설명회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16,400	-	16,400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2020.02.06.	**6급 D	2020.01.20.	퇴비부속도시행 관련 점검회의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16,400	-	16,400	
2020.02.06.	**8급 C	2020.01.20.	퇴비부속도 점검회의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16,400	-	16,400	
2020.02.06.	**6급 D	2020.01.30.	2020년 수산사업지침 시달 회의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27,800	-	27,800	
2020.02.06.	**8급 E	2020.01.30.	수산사업계획 지침시달 회의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27,800	-	27,800	
2020.02.12	**6급 F	2020.01.30.	충북무역통상 진흥 시책설명회 참석	일비	10,000	10,000	-	식비 과다 지급
				식비	8,000	-	8,000	
				교통비	-	-	-	
2020.03.04.	**7급 G	2020.01.09.	2020년 공익직불제 도 권역별 사업설명회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8,000	8,000	-	
				교통비	16,000	-	16,000	
2020.03.04.	**6급 H	2020.02.12	구제역 방역추진 관련 회의 참석	일비	20,000	2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식비	8,000	8,000	-	
				교통비	24,200	18,600	5,600	
2020.03.04.	**8급 A	2020.02.12	구제역 방역추진 관련 회의 참석	일비	20,000	2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식비	8,000	8,000	-	
				교통비	24,200	18,600	5,600	
2020.03.11.	농업6급 D	2020.02.14.	산지생태축산 목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일비	10,000	10,000	-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	-	-	
				교통비	16,400	-	16,400	

## 2.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30,000	10,000	20,000	
2019.11.05.	**8급 I	2019.10.22.	일손돕기	10,000	-	1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9.12.13.	**7급 J	2019.11.18.	로하스인증 신청농가 방문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호 및 별표1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 1박당 4~7만원(정액지급 시 4~6만원, 실비정산 시 5~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그러나, 농정과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9급 A 외 7인에 대한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교통비보다 과다하게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농업9급 A의 경우 세부사업 목적과 다르게 출장하였음에도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6급 F의 경우 13시 이후 출장임에도 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 또한, [현황2]와 같이 \*\*8급 I에 대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세부사업 목적과 다르게 출장하였음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였고, 행정7급 J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1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총 242,50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 된 여비 242,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53,7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미준수시간	적정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8-03-31	**6급	K	토요일	현업	10:00	17:56	236	240	산불비상근무
2018-03-31	**7급	L	토요일	현업	08:44	18:12	88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8급	M	휴일	현업	09:29	18:03	34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28	**8급	M	토요일	현업	12:13	21:09	56	480	시상항실근무

○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30	82	112	1,097,440	30	77	107	1,043,700	53,740	
**6급	K	11,401	10	7	17	193,810	10	4	14	159,610	34,200	2018.3월분
**7급	L	10,299	10	14	24	247,170	10	13	23	236,870	10,300	2018.3월분
**8급	M	9,246	10	61	71	656,460	10	60	70	647,220	9,240	2018.4월분

##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정과의 구제역(AI)방역근무 및 안전관리과의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근무 시에는 편성된 근무자 명단에 따라 주중 및 주말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 8시간,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정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6급 K 외 2명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2]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53,74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된 수당 53,7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강신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693,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원)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부당청구내용	안전관리비 계약액	부당청구액 (재경비 포함)	비고
황간휴게소 으뜸산품 판매장 보수공사	54,937	□□건설(주) 김○○	18.11.16 18.11.21 18.12.20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1,147,163	693,000	회수

###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18.11.16. □□건설(주) 김○○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황간휴게소 으뜸산품 판매장 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명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이거나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건설장비 유도자 및 위험물 감시자의 인건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단순 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 청구한 693,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 된 공사비 693,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남진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소홀

【현 황】

○ 2018년도 지역별 관심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조 사업자	사업비 (균비)	집행액	불용액	비고
길현리 내수면 어업진흥사업	1호	-	19,000	-	19,000	
용산양봉 작목반 저온저장고	1개소	-	10,000	-	10,000	

【위법부당사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
-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연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 시행, 보조금 지급, 정산검사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2018년도 지역별관심 사업으로 길현리 내수면어업진흥사업 및 용산 양봉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보조사업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사고이월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분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